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8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8. 31.

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9. 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아동청년과장

가. 제안이유

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(가칭)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
○ 민간위탁 내용

1) 위탁기간 : 5년

2)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3)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(가칭)	소 재 지	규 모	정원(예정)
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	토정로 149, 3층(상수동)	125.25㎡	20명
위 치 도			

4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5) 소요예산

〈단위:천원〉

연도별	사업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총사업비	774,931	국비 92,412, 시비 640,519 구비 42,000	
2022년	147,045	- 인건비 : 128,445 -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50,898	- 인건비 : 132,298 -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54,867	- 인건비 : 136,267 -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58,955	- 인건비 : 140,355 - 운영비 : 18,600	
2026년	163,166	- 인건비 : 144,566 - 운영비 : 18,600	

※ 산출근거 : 2021년 「우리동네키움센터」 설치·운영 계획

[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-1899 (2021.2.3.)]

○ 세부추진일정

1)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: 2021.9.~11.

2) 리모델링 설계·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: 2021.7.~2021.11.

3)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: 2022.1.

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○ 본 동의안은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경감을 위해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.

○ 위탁운영 시설은 (가칭)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위탁기간은 센터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,

-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과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맞춤형 돌봄 상담 등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.

○ 다만,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서 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센터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참 고 자 료

1.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
2. 관련법규

참고자료 1. 마포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

(2021. 8월 현재)

연번	개소일	시설명	소재지	규모	위탁운영체	이용아동 정원/현원
1	2018. 6.1.	마포구1호점 (성산2동)	월드컵로36길 52, 2층(성산동)	102.15㎡	마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	25/25
2	2019. 8.22.	마포구2호점 (망원1동)	희우정로 77, 1층(망원동)	100.84㎡	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	25/25
3	2020. 12.21.	마포구3호점 (용강동)	대흥로4길 13, 2층(용강동)	113.56㎡	사단법인 꿈이루는사람들	20/20
4	2021. 6.28.	마포구4호점 (공덕동,융합형)	만리재로 96, 2·3층(공덕동)	332.74㎡	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	32/15
5	2021. 6.28.	마포구5호점 (아현동)	백범로31길 8, 3층(공덕동)	243.67㎡	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	30/11
6	2021.9. 개소예정	마포구6호점 (염리동)	대흥로24길 50, 1층(염리동)	208.37㎡	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	24/ 0
7	2022.1. 개소예정	마포구7호점 (서강동)	토정로 149, 3층(상수동)	125.25㎡	미정	20/ 0

참고자료 2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,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 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**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**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9. 1. 15.]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4. 5. 20., 2016. 2. 3., 2016. 5. 29., 2017. 10. 24.>

1. "**사회복지사업**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   나. 「**아동복지법**」
   다. 「노인복지법」
  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  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  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  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**위탁계약기간**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